「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춘남 의원

2. 찬 성 자: 김정미 의원 외 12인

3. 제안이유

○ 경상북도 내에서 구미시의 치안지표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발상황시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안 제13조의5)

나.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기준(안 제14조제3항)

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별표 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5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우발상황 발생 시 순찰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기준 완화,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객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신설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중[1] 범죄분야에서 구미시가 최근 3년 연속 4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치안분야에 대한 정책 보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순찰차 전용구역 설치에 따른 순찰환경 편의 제공과 출동시간 단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와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객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반영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집행기관에서는 신고 건수와 범죄 발생 빈도 등 치안 데이터에 기반하여 구미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가 어려운 지역의 주민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여야 할 것임.

1)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공표하고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정보